

# 7. 都市計劃施設基準에 關한 規則中 改正令

建設部令 第522號 1992. 12. 16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지역 또는 지구안의 시설에 대한 결정) 법 제17조·법 제18조·법 제20조 내지 제20조의4·법 제21조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시설은 그 지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시설의 결정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시설은 그 시설의 결정에 있어서 지역·지구 및 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제3항중 “여객자동차정류장·고속 여객자동차정류장”을 “공용여객자동차 터미널”로 한다.

제6조의2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8조 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8조 제3항의 표중 광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광 로	1류	70미터이상
	2류	50미터이상 70미터미만
	3류	40미터이상 50미터미만

제8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중 “국지도로”를 각각 “집산도로”로 하고, 동항제4호중 “구획도로”를 “국지도로”로 하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고속도로 : 도시내 주요지역 또는 도시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차량이 주요 교차로를 통하여서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대량 교통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

제9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근의 도시 및 지역과 연계한 광역 교통체계 및 다른 교통기관과의 일체성

제10조 제1호 다목중 “국지도로”를 “집산도로”로 하고, 동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호중 “연도”를 “도로변”으

로 하며, 동조제9호중 “진입도로이외의 도로”를 “진입도로 및 기존의 마을도로 외의 도로”로 한다.

라. 국지도로의 배치간격 : 장측 90미터 내지 150미터, 단측 30미터 내지 60미터

2. 도로의 너비는 당해 도시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감안한 교통량의 교통기관별 분담계획과 당해 도로의 기능 및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차선의 너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전차선의 너비는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설계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이상인 도로 : 3.5미터이상

나. 설계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이상 80킬로미터미만인 도로 : 3.25미터 이상

다. 설계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미만인 도로 : 3.0미터이상

제10조의2 제2호중 “지하철역·철도역 등”을 “철도역등”으로 한다.

제10조의3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행자전용도로의 최대 종단기울기는 10퍼센트로 한다. 다만, 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보행자전용도로의 너비는 1.5미터이

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자전거전용도로의 설치기준)

①자전거전용도로의 최대종단기울기는 5퍼센트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전거전용도로의 너비는 3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1.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의 표중 “구획도로”를 “국지도로”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도로모퉁이변의 처리기준) ①도로의 교차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활한 교통 및 가시거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모퉁이변의 길이를 별표 2의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 또는 복합곡선의 형상으로 설치하되, 곡선반경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기능이 서로 다른 도로가 접속되는 곳에서는 상위 기능도로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간선도로 : 15미터이상

2. 보조간선도로 : 12미터이상

3. 집산도로 : 10미터이상

4. 국지도로 : 6미터이상

③도로의 교차방식을 도류화식평면교차

방식 또는 로터리식평면교차방식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모퉀이변을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제2항제4호다목을 동호라목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계단부 구배”를 “계단부의 단 높이 및 너비”로 하여 이를 동호다목으로 하며, 동호에 나목·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승강방식은 계단 또는 경사로로 하여야 한다.

마. 경사로의 기울기는 12퍼센트이하로 하여야 한다.

바. 횡단보도교의 양옆에는 높이 1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고 각 계단 모서리의 발디딤부분은 미끄럼방지 처리를 하여야 하며, 횡단보도교의 승강부분과 상단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중 “도로구조령”을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자동차정류장의 종류) ①이 규칙에서 “자동차정류장”이라 함은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과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화물터미널을 말한다.

②자동차정류장의 운송대상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동차정류장을 말한다.

2. 공용화물터미널 : 화물터미널사업자가 화물의 적하를 목적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해운업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동차정류장을 말한다.

제20조 제1호중 “여객자동차정류장 또는 고속여객자동차정류장”을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로 하고, 동호다목중 “고속여객자동차정류장 또는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시외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을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정류장”로 하며, 동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의 소음권에는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정류장은 일반주거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정류장은 자연녹지지역에도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 제2호중 “화물자동차정류장”을 “공용화물터미널”로 하고, 동조제2호라 목중 “5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를 “5킬로미터 내지 20킬로미터”로 하며, 동호마목 본문중 “토지이용현황”을 “토지이용계획”으로, “상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 하고, 동호마목 단서중 “자연녹지지역에”를 “자연녹지지역에도”로 한다.

제21조 제1항중 “자동차정류장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자가주유시설”을 “주유소”로, “자가정비시설”을 “정비시설”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 (자동차 및 중기 검사시설)  
이 규칙에서 “자동차 및 중기 검사시설”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

사소와 중기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검사소를 말한다.

제21조의3의 제목 및 본문중 “자동차검사시설”을 각각 “자동차 및 중기 검사시설”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수검차량”을 각각 “수검차량 및 중기”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차 및 중기 검사시설은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의4의 제목중 “자동차검사시설”을 “자동차 및 중기 검사시설”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동차 및 중기 검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6조 및 중기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중 “지역간의 교통처리”를 “일시대량소송”으로,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를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로 한다.

제23조 제3호중 “도로 또는 도시고속철도와 연결되는 장소”를 “도로와 연결되는 곳”으로 하고, 동조에 제4호 및 제5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철도의 노선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계획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과 하천 등의 통과에 따른 기술적 사항 및 건설비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철도역은 전용주거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에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중 “철도법”을 “철도법 및 도시철도법”으로 한다.

제31조 내지 제3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 제5호중 “가항수로화하고자 하는 경우”를 “뱃길로 만들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제36조 제4호중 “형하공간”을 “높이 기타 공간”으로 한다.

제37조 제1호중 “항만법 제2조제2항”을 “항만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나목중 “돌제물양장”을 “돌핀·램프”로 하며, 동호다목 내지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임항교통시설

라. 여객이용시설

마. 화물보관·처리시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공항의 종류) 이 규칙에서 “공항”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공항시설을 말한다.

제2장에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자동차 및 중기 운전학원) 이 규칙에서 “자동차 및 중기 운전학원”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 및 중기운전학원을 말한다.

제42조의3 (자동차 및 중기운전학원의 결정기준) 자동차 및 중기운전학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 및 중기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인근 주거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2. 소음·대기오염 등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42조의4 (자동차 및 중기 운전학원의 설치기준) 자동차 및 중기 운전학원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3조중 “도시계획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도시계획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4조제3항제1호중 “고속철도”를 “철도”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건축물에 축조되는 광장은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고 광장의 기능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위에 결정하되, 건축물과 광장이 상호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차점광장에는 횡단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47조 제3호중 “상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한다.

제48조 제1항제4호가목(3)중 “숙박시설”을 “숙박시설·유스호스텔”로 하고, 동목(5)중 “식당”을 “대중음식점”으로 한다.

제48조의2중 “제48조제4호”를 “제4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장에 제54조의2 내지 제5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청소년시설) 이 규칙에서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육성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전용시설을 말한다.

제54조의3 (청소년시설에 대한 결정기준) ①청소년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흥업소 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과 가까운 곳에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지역별 인구밀도를 감안하여 청소년의 접근이 쉽도록 적정한 배치간격을 유지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규모가 작은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근린주거지역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4.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과 조화되도록 결정하되,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근린주거구역의 결정기준은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현황에 따르도록 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2천 500세대를 1개 근린주거지역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제54조의4 (청소년시설의 설치기준) 청소년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6조 제7호중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를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유통업무설비) 이 규칙에서 “유통업무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이 동일한 장소 또는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시설에 있어서는 각호중 하나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1.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매센타나 동법 제2조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단지 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을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2.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또는 철도의 화물역
3. 창고·야적장 또는 저장소(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소 및 저장고를 제외한다)
4. 화물적하시설 또는 화물적치용건조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5. 자동차운송사업·창고업 또는 도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제59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요시설의 주변 또는 과밀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

며,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60조 제1항제5호 및 동조제2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통업무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외에 화물터미널·철도의 화물역·도매센타 및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6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이 규칙에서 “전기공업설비”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말한다.

제68조 제1호다목중 “토지이용현황”을 “토지이용계획”으로, “전용공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 (가스공급설비) 이 규칙에서 “가스공급설비”라 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자동차용기충전시설을 제외한다)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을 말한다.

제71조제1호중 “토지이용현황”을 “토지이용계획”으로, “주거지역·준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한다.

제72조중 “도시가스사업법”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한다.

제72조의2 내지 제7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 (열공급설비의 종류) 이 규칙에서 “열공급설비”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열공급시설로서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을 말한다.

제72조의3 (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 ① 열원시설은 사고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열원시설중 쓰레기를 소각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열원시설은 대기 및 수질오염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결

정하되, 차량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인화 및 악취등으로 인한 인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열공급설비의 외곽지역에 완충녹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2조의4 (열공급설비의 설치기준) 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쓰레기를 소각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7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이 규칙에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석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석유를 비축·저장하는 시설 또는 송유시설
2.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
3. 소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소방법시행령 별표 3에 의한 인화성액체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통저장시설

제75조중 “석유사업법”을 “석유사업법·



송유관사업법 및 소방법”으로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방송·통신시설) 이 규칙에서 “방송·통신시설”이라 함은 전기통신기  
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용전기통신설비, 전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 및 종합유선방송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  
선방송시설을 말한다.

제77조의 제목중 “통신시설”을 “방송·  
통신시설”로 하고, 동조 본문중 “무선  
설비중 방송시설에 대하여는”을 “방송  
·통신시설은”으로 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 (방송·통신시설의 설치기준) 방  
송·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전  
기통신기본법·전파법 및 종합유선방송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0조 제1호중 “주거전용지역·전용공  
업지역·공업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을  
“전용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  
업지역·유통상업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으로 한다.

제81조 제1항제2호다목중 “주차장(입장  
자 200인당 1대이상)”을 “주차장(입장  
자 150인당 1대이상)”으로 하고, 동조  
제2항나목중 “관광사업시설”을 “관광  
사업시설·유스호스텔”로 한다.

제85조 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민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로 설  
치하되, 가급적 주거구역의 중심시  
설이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근린주거구역단위  
미만인 경우에도 국민학교를 결정할  
수 있다.

제86조중 “교육법 및 유아교육진흥법”을  
“교육법·유아교육진흥법 및 특수교육  
진흥법”으로 한다.

제87조 (도서관) 이 규칙에서 “도서관”  
이라 함은 도서관진흥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  
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을 말  
한다.

제89조중 “도서관법”을 “도서관진흥법”  
으로 한다.

제90조중 “시험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  
는 연구시설”을 “시험등을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출연 또는 출자하여 설치하는 연구시  
설”로 한다.

제5장에 제91조의8 및 제91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8 (공공직업훈련시설) 이 규칙  
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이라 함은 직  
업훈련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제91조의9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기

준)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기준은 직업훈련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3조 제2항중 “복개된 하천은 이를 도로·광장·주차장 및 녹지등 도시공간 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를 “복개된 하천은 이를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광장·주차장·체육공원·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103조중 “소방법 제41조제2항”을 “소방법 제42조”로 한다.

제110조중 “항만법 또는 방조제관리법”을 “항만법·방조제관리법 또는 어항법”으로 한다.

제1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93조제2항의 규정은 유수지를 복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7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구밀집지역과 학교·연구시설·의료시설·종교시설등 정온을 요하는 시설에 근접하여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9조 (공동묘지) 이 규칙에서 “공동

묘지”라 함은 매장및묘지등에 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당과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 및 사설납골당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 및 납골당을 말한다.

제120의 제목 “(공원묘지과의 관계)”를 “(묘지공원과의 관계)”로 한다.

제12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동묘지에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를 행하는 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화장장에는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납골당과 제1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5조의2 내지 제12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5조의2 (장례식장) 이 규칙에서 “장례식장”이라 함은 가정의례에 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식장 등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식장을 말한다.

제125조의3 (장례식장의 결정기준)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연

구소·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등의 공공문화시설에 인접한 곳에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주위의 다른 건축물등과 차단되도록 시설의 외곽지역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교통수단과 연결이 쉬운 곳에 결정하되,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25조의4 (장례식장의 설치기준) 장례식장의 설치기준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6조 내지 제1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6조 (폐기물처리시설) 이 규칙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시설을 말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동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등이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

4.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출물처리업자로서 지정받은 자가 설치하는 적출물처리시설(소각·재생처리시설에 한한다)

제127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구밀집지역 및 공공기관·학교·연구시설·의료시설·종교시설등과 근접하지 아니하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풍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고 시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3. 대기 및 수질오염등 각종 환경오염 문제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시설의 주위에 담장등의 은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용수와 동력의 확보가 용이하고 차량이 접근하기 쉬운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5. 매립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은 가급적 지형상 저지대·저습지·협곡·계곡·공유수면매립 예정지등에 결정하여야 하며 매립후의 토지이용계획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6. 일반폐기물처리시설과 적출물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생산농지지역 및 자연농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폐기물처리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2천톤이하인 시설과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압축·파쇄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1천톤이하인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에도 이를 결정할 수 있다.
7.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매립의 방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28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폐기물관리법 및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

보전법시행규칙 별표 7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28조의2 내지 제12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이 규칙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설치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말한다.

제128조의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27조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2.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생산농지지역 및 자연농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28조의4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0조 제1호중 “토지이용현황”을 “토지이용계획”으로, “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이외의 지역에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1조의2 내지 제13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1조의2 (폐차장) 이 규칙에서 “폐차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131조의3 (폐차장에 대한 결정기준) 폐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구밀집지역·공공기관·학교·연구시설·의료시설 및 종교시설등과 인접한 곳에 결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쉬우며, 시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3. 대기·수질오염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소각시설 및 폐유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1조의4 (폐차장의 설치기준) 폐차장의 설치기준은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 ③(도로명칭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국지도로·구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는 각각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집산도로·국지도로 및 도시고속도로로 결정된 것으로

로 본다.

④(통신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통신시설은 제7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시설로 결정된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용도지역안 건축물 용도제한의 예외) 영 제76조제1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 개정이유 □

도시계획법의 개정(1991. 12. 14 법률 제4,427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2. 7. 1. 대통령령 제13,684)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새로이 추가된 열공급설비·폐기물처리시설·폐차장·청소년시설·장례식장등의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기준 및 설치기준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정류장·국민학교·종합의료시설등의 결정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도시계획시설중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정류장은 종전에는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준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결정할 수 있었으나, 도시지역에서의 입지선정의 어려움과 시내버스가 도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생산녹지지역에도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함(제20조 제1호라목).

나. 자동차 및 중기 운전학원·청소년시설·열공급설비·공공직업훈련시설·장례식장·수질오염방지시설 및 폐차장이 새로이 도시계획시설로 추가됨에 따라

그 결정기준 및 설치기준등을 정함(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4·제54조의2 내지 제54조의4·제72조의2 내지 제72조의4·제91조의8·제91조의9·제125조의2 내지 제125조의4·제128조의2 내지 제128조의4·제131조의2 내지 제131조의4).

다. 전기공급설비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추가하고, 종전까지는 생산녹지지역에는 운동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었으나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이를 허용하도록 함(제68조제1호다목 및 제80조제1호).

라. 국민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인구 2천 500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1개 근린주거구역별로 1개의 국민학교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관할 교육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미만인 경우에도 국민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제85조제1항제9호).

마. 복개된 하천위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여, 이를 광장·주차장·체육공원·자동차운전연습장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우수지를 복개한 경우에도 하천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93조제2항 및 제112조제2항).

바. 공동묘지 및 화장장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22조제2항 및 제125조제2항).

사. 종합의료시설의 입지지역에 생산녹지지역을 추가하여 종합병원의 증설을 촉진함(제130조제1호). 〈건설부 제공〉

**씨앗뿌린 2백만호 열매맺는 내집의꿈**